

# 슬밭공원 승윤 노블리안아파트 신축공사 입주자모집공고

- 본 아파트는 2018.02.09.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됨.
- 본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유의바람.
- 본 아파트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8년 03월 28일.(청약자격조건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 청약자격조건판단 기준일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5조에 의거 주택건설지역인 서울특별시는 물론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거주자까지 확대하여 공급. 단, 동일 신청자격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서울특별시 1년이상(2017.03.28 이전부터 계속 거주)거주한 신청자가 서울특별시 1년미만(2017.03.29) 거주자 및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 거주신청자보다 우선하며, 서울특별시 1년미만 거주자 및 인천광역시, 경기도지역 거주신청자로 신청하신 분은 입주자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제1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일반공급 대상 주택수의 40%(소수점이하는 절상한다)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함.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syoon.co.kr](http://www.syoon.co.kr))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예비입주자 선정방식이 추첨제에서 가점제 방식으로 변경되었으며,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하고 남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함.
-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에 의거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금융결제원에서 실시함.(단,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업무는 사업주체가 담당하며, 동·호수 배정 추첨은 금융결제원에서 실시함.)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 정착을 위한 청약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람.
- 2순위 청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으로 청약접수가 가능하며, 인터넷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청약통장을 개설하고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으신 후 신청하기 바람.
- 청약자격별 청약접수 일정이 다르므로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28조에 의거 ‘우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본인과 세대원 주택소유’를 점수로 계산하여 당첨자를 선정하는 ‘청약 가점제도’가 적용됨.(본 아파트는 주택형 85㎡이하 주택으로 100%가점제로 입주자 선정)
- ※ 본 아파트는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재당첨 제한)」이 적용되오니, 아래 사항을 참조하시어 청약에 착오 없으시기 바람.
  - 청약 1순위 자격 제한(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 포함) : 세대주가 아닌 자,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전지역 해당),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1순위 청약 불가(2순위로 청약 가능)
  - 재당첨 제한(특별공급 및 2순위 포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및 과거 청약과열지역에서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에 속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는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또한,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된 자 및 세대에 속한자는 당첨 주택형별 재당첨 제한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재당첨 제한 대상 주택 : 규칙제3조제2항 각호(제3호, 제5호, 제7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의 주택, 제47조에 따라 이전기관 종사자 등에 특별공급되는 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 ※ 과거 5년 이내에 다른주택 당첨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7호에 따라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재개발, 재건축 주택에 대하여 해당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당시 입주대상자로 확정된 자, 지역(직장 포함)주택조합의 경우 사업계획승인일 당시 입주대상자로 확정된 자는 1순위 자격제한이 적용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단 관리처분계획인가, 사업계획승인일 이후 인권을 획득한 자는 제외)
- ※ 재당첨 제한기간 : 과밀억제권역 85㎡이하 - 당첨일로부터 5년, 85㎡초과 - 당첨일로부터 3년 / 과밀억제권역외 지역 85㎡이하 - 당첨일로부터 3년, 85㎡초과 - 당첨일로부터 1년
- ※ 청약과열지역 : 서울시·경기도 과천시·성남시·광명시 - 전역 / 하남시·고양시·남양주시·화성시·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부산 기장군(민간택지는 제외됨) - 공공택지/ 부산 해운대구·연제구·동래구·남구·수영구·부산진구 - 전역
- ※ 투기과열지구 : 서울시·경기도 과천시·성남시 분당구·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대구광역시 수성구
- ※ 과거 당첨사실 조회 방법 : 청약통장 가입은행에 따라 금융결제원 주택 청약서비스([www.apt2you.com](http://www.apt2you.com)) 또는 KB국민은행([www.kbstar.com](http://www.kbstar.com))에서 신청자, 배우자 및 세대원 각자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별도로 각각 검색하여야함.
  - 부적격 당첨자 제한기간 강화 : 당첨일로부터 3개월 - 당첨일로부터 1년 연장
  - 모든 지역 2순위 접수방법 변경 : 청약신청금 → 청약통장으로 신청(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2016. 11. 15 규칙개정시 기반영)
-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세대주 자격을 갖춘 청약자(배우자 분리된 세대의 세대주)가 각각 청약하여 당첨되는 경우 모두 재당첨제한 위반에 따른 부적격당첨자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람.
- 2017. 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제6항 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제한자로 관리되오니,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후 청약하시기 바람.
- ※ 가점제 제한사항 : 가점제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년간 가점제에 의한 재당첨 제한(당첨자발표일이 2017.10.18이후인 민영주택의 가점제로 당첨된 경우부터 적용)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의 청약자격이 개정되었으니 청약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무주택군인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유주택자도 청약 가능)
    - 입주자저축 1년이상 가입자 → 본 주택의 해당순위(1순위 및 2순위)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시 청약 가능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봅니다.
    - 다만,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수도권 거주자로 봅니다.
    - 또한, 수도권외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 중 전입제한일이 적용된 경우 기타지역 거주자의 자격으로 청약됩니다.
  - 분양권 전매 및 재당첨 제한기간
    - 서울시 도봉구 는 과밀억제권역이며, 본 아파트는 수도권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주택법」 제64조 및 「주택법시행령」 제73조에 의거 최초로 주택공급 계약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소유권이전등기일(3년을 초과하는 경우 3년으로 한다)까지 전매가 금지됨.
    - 본 아파트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임.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람.(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함.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음.
  -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5일이 지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동안에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던 것을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 투기 적발자 처벌(「주택법」 제65조 및 제101조)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법」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업자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됨.
- ※ 2018.02.09. 개정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1.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20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도봉구청 주택과 - 14285호 (2018.03.27)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 위치 : 서울특별시 도봉구 쌍문동 503-29번지 일원

■ 사업 유형 : 프린스연립주택재건축정비사업

■ 공급 규모 : 지하 1층~지상 7층 1개동 총 81세대 중 일반 분양 41세대(특별공급 세대수 포함), 부대복리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 4 세대, 다자녀특별공급 : 4 세대, 신혼부부특별공급 : 4 세대, 노부모부양특별공급 : 1세대)

■ 공급 대상

(단위 : ㎡)

구분	주택관리번호	타 입	주택형 (주거전용면적 기준)	세대별계약면적					대지지분	공급세대수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
				세대별 공급면적			기타공용면 적 (주차장포함)	합계		특별공급	일반공급	합계	
				전용 면적	주거 공용 면적	소계							
민 영 주 택	2018000158-01	32	32.1410	32.1410	10.6255	42.7665	15.2926	58.0591	21.5317	-	1	1	
	2018000158-02	34A	34.4500	34.4500	11.6914	46.1414	16.3918	62.5332	23.2282	1	1	2	
	2018000158-03	34B	34.7607	34.7607	11.6499	46.4106	16.5393	62.9499	23.3642	-	1	1	
	2018000158-04	36	36.4296	36.4296	12.2751	48.7047	17.3339	66.0386	24.5170	1	3	4	
	2018000158-05	40	40.0150	40.0150	14.1526	54.1676	19.0420	73.2096	27.2708	1	2	3	1
	2018000158-06	47	47.8365	47.8365	14.1665	62.0030	22.7581	84.7611	31.2127	3	3	6	1
	2018000158-07	50A	50.2921A	50.2921A	14.4608	64.7529	23.9286	88.6815	32.5971	1	1	2	
	2018000158-08	50B	50.2921B	50.2921B	14.4608	64.7529	23.9286	88.6815	32.5971	1	1	2	
	2018000158-09	52	52.0288	52.0288	16.2391	68.2679	24.7565	93.0245	34.3692	1	1	2	
	2018000158-10	54A	54.3305	54.3305	15.3732	69.7037	25.8509	95.5546	35.0891	-	1	1	
	2018000158-11	54C	54.4342C	54.4342C	16.1321	70.5663	25.8985	96.4648	35.5220	2	4	6	
	2018000158-12	54D	54.4342D	54.4342D	16.1321	70.5663	25.8985	96.4648	35.5220	-	1	1	
	2018000158-13	54E	54.8704	54.8704	15.4751	70.3455	26.1078	96.4534	35.4113	1	2	3	
	2018000158-14	57	57.4898	57.4898	17.5195	75.0093	27.3545	102.3638	37.7623	-	1	1	
	2018000158-15	58A	58.2488	58.2488	16.3130	74.5618	27.7161	102.2779	37.5357	-	1	1	
	2018000158-16	58B	58.4075	58.4075	16.6413	75.0488	27.7875	102.8363	37.7774	1	4	5	

■ 공급 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원)

세 구	타 입	주 택 형	공 급 세 대 수	층 수	공 급 금 액			분 양 금 액		
					대 지 비	건 축 비	합 계	계 약 금 계 약 시	1차 중 도 금 2018/06/15	잔 금 입 주 시
개 인 분	32	32.1410	1	4	101,858,744	109,641,256	211,500,000	21,100,000	21,100,000	169,300,000
	34A	34.4500	2	7	111,506,670	120,026,330	231,533,000	23,100,000	23,100,000	185,333,000
	34B	34.7607	1	4	110,045,972	118,454,028	228,500,000	22,800,000	22,800,000	182,900,000
	36	36.4296	2	1-2	114,621,188	123,378,812	238,000,000	23,800,000	23,800,000	190,400,000
			1	1	111,069,857	119,556,143	230,626,000	23,000,000	23,000,000	184,626,000
			1	4	117,029,196	125,970,804	243,000,000	24,300,000	24,300,000	194,400,000
	40	40.0150	1	1	112,694,781	121,305,219	234,000,000	23,400,000	23,400,000	187,200,000
			1	2	113,759,121	122,450,879	236,210,000	23,600,000	23,600,000	189,010,000
			1	3	114,982,389	123,767,611	238,750,000	23,800,000	23,800,000	191,150,000
	47	47.8365	1	1	133,885,253	144,114,747	278,000,000	27,800,000	27,800,000	222,400,000
			1	2	135,802,509	146,178,491	281,981,000	28,100,000	28,100,000	225,781,000
			1	3	137,202,525	147,685,475	284,888,000	28,400,000	28,400,000	228,088,000
			3	5-7	139,279,191	149,920,809	289,200,000	28,900,000	28,900,000	231,400,000
	50A	50.2921A	1	2	144,962,090	156,037,910	301,000,000	30,100,000	30,100,000	240,800,000
			1	3	148,333,302	159,666,698	308,000,000	30,800,000	30,800,000	246,400,000
	50B	50.2921B	2	7	152,815,568	164,491,432	317,307,000	31,700,000	31,700,000	253,907,000
	52	52.0288	1	2	144,668,313	155,721,687	300,390,000	30,000,000	30,000,000	240,390,000
			1	3	144,668,313	155,721,687	300,390,000	30,000,000	30,000,000	240,390,000
	54A	54.3305	1	7	167,620,484	180,427,516	348,048,000	34,800,000	34,800,000	278,448,000
	54C	54.4342C	1	1	149,537,306	160,962,694	310,500,000	31,000,000	31,000,000	248,500,000
			1	2	150,548,669	162,051,331	312,600,000	31,200,000	31,200,000	250,200,000
			2	3-4	152,176,001	163,802,999	315,979,000	31,500,000	31,500,000	252,979,000
			1	5	157,058,960	169,059,040	326,118,000	32,600,000	32,600,000	260,918,000
			1	6	158,686,292	170,810,708	329,497,000	32,900,000	32,900,000	263,697,000
	54D	54.4342D	1	7	158,686,292	170,810,708	329,497,000	32,900,000	32,900,000	263,697,000
	54E	54.8704	1	1	158,041,427	170,116,573	328,158,000	32,800,000	32,800,000	262,558,000
			1	3	159,629,749	171,826,251	331,456,000	33,100,000	33,100,000	265,256,000
			1	5	165,983,038	178,664,962	344,648,000	34,400,000	34,400,000	275,848,000
	57	57.4898	1	2	170,227,875	183,234,125	353,462,000	35,300,000	35,300,000	282,862,000
	58A	58.2488	1	7	175,988,312	189,434,688	365,423,000	36,500,000	36,500,000	292,423,000
58B	58.4075	1	2	168,735,873	181,628,127	350,364,000	35,000,000	35,000,000	280,364,000	
		1	3	170,432,074	183,453,926	353,886,000	35,300,000	35,300,000	283,286,000	
		1	5	175,519,713	188,930,287	364,450,000	36,400,000	36,400,000	291,650,000	
		2	6-7	177,215,433	190,755,567	367,971,000	36,700,000	36,700,000	294,571,000	

※ 평형환산방법 : 공급면적(㎡) ×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 상기 공급금액은 분양가 자율화에 따라 공급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등으로 차등을 두어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이며,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은 부가가치세 적용대상이 아님.

※ 세대별 공급금액은 동호수별로 상이하니 정확한 세대별 공급금액은 건물주택에서 확인하여야 함.

※ 면적합산시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버림방식이 적용되어 합산 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공통 유의 사항

- 본 아파트는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 받은 아파트이며,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주)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주)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락하는 경우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함.
- 근린생활시설(단지 내 상가)은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음.

- 2009.4.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신청 바람.
- 상기 주택형별 공급금액은 조합 중후감정평가금액을 기준으로 총별 등 주변여건을 감안하여 적의 조정한 금액임.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통합취세비가 미포함 됨.
- 상기 공급금액에는 추가 선택품목[발코니확장,가구,가전등]비용이 미포함된 가격이며 추가선택 품목은 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가능함.
- 상기 공급금액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음.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벽체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경비실, 펌프실/전기실, 기계실 등의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 및 지하피트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음.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공급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사업시행변경, 관리처분변경,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라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음.
- 공급면적과 대지면적은 법령에 따라 공부정리 절차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부대복리시설 면적 조정 등으로 처리할 수 있음. 이 경우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상기 면적은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표현되므로 면적 계산상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버림방식 차이로 인하여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는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택가격(분양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전에 완납하여야 함.
- 중도금 및 잔금 납입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납부해야 함.(연체료 납부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분양가에 계상되지 않았거나 변경되는 토지관련 조세는 추후 부과되는 실 과세금액을 입주자 잔금 납부시 납부하여야 함.
-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한)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이상 되어야 한다.)를 기준으로 전 1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며, 관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음. 다만,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함.(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위 단서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함)
- 중도금 금융대출을 원할시 수분양자가 계약체결 후 지정된 중도금 대출 협약은행과 중도금대출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함.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함(미납시 연체료 부과됨).
- 본 주택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함.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장애인용 승강기의 면적이 공제됨.
- 본 아파트의 판매조건은 판매시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판매조건은 소급해서 적용하지 아니 할 수 있음.

## 2.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 방법

### ■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공급일정

#### 1. 신청 및 당첨자 선정일시·장소

- 해당 청약신청 일시에 당사 건분주택(모델하우스)에 방문하여 청약신청 하여야 함.

구분	신청접수일	장소
특별공급	2018.04.02 (월) / 10:00~14:00	솔밭공원 승운 노블리안아파트 건분주택 (서울시 강북구 수유동 2-5번지, 연락처 : 1600-0267
특별공급 당첨자 발표	2018.04.02 (월) / 16:00	

※ 당사 사업주체 사정에 따라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발표는 지연될 수 있음.

#### • 당첨자 선정(공고)유의사항

- 개별 통지는 하지 않으며 당첨자 명단에 대한 전화문의는 응답하지 않음.
- 사업주체는 당첨자만을 선정하며, 동·호는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금융결제원 입주자선정 프로그램으로 배정함. (동.호배정 결과는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공고할 예정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5항에 의거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업무 중 동·호수 배정업무를 추정기관(전산관리지정기관)에서 수행 하므로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일시와 동·호수 배정결과 발표일시가 상이함.

#### 2. 특별공급 신청자격

-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단, 국가유공자(국가보훈대상자,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철거민, 장애인 제외]
- 과거 재당첨제한 주택(분양가상한제적용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이전기관중사자특별공급 등)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당첨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는 재당첨 제한기간 미경과시 특별공급 청약 불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한 기관추천 특별공급(단,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주택 소유자는 제외), 제40조에 의한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제41조에 의한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46조에 의한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함.

-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은 24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은 24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정해진 날에 입금한 납입인정금액이 85㎡ 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은 24개월)이 된 자 중 모집공고일 현재 잔액이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각 청약통장으로 지역별 예치금액 범위 내에서 해당 면적에 모두 청약 가능함.

#### 3. 특별공급 유의사항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거주기간,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및 과거 청약과열지역에서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기간에 속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는 특별공급 청약불가.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신청자 및 그 세대원(부부포함)이 각각 청약 신청하여 중복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이 취소됨.(당첨자 명단관리, 계약체결 불가, 입주자저축 효력 상실 및 재사용 불가) 단,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의 경우 무주택세대주 요건 적용됨.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은 다음 중 1에 해당되는 분은 신청이 불가함.
  - 세대주가 아닌 자,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 1주택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 특별공급은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주택을 특별 공급함.(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주 또는 세대원(다음 각 항목의 사람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을 말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

- 가.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배우자이면서 해당 세대주 또는 세대원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
- 나.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직계존비속으로서 가족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 다.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의 직계비속인 세대원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 라.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의 직계존속으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 특별공급 신청자는 일반공급 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당첨자로 선정되면 해당 특별공급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 청약신청은 무효처리 함.
- 특별공급 당첨자는 일반공급 신청이 불가하며, 특별공급 신청 미달시 잔여물량을 일반공급으로 전환하고, 특별공급 물량에 대해서는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음.
- 부적격된 특별공급주택 및 미계약 또는 계약 해제 또는 해지된 특별공급주택은 일반공급 예비당첨자에게 공급됨.
- 당첨자로 선정된 이후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음.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서는 주택 소유에 관한 유의사항(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더라도 무주택으로 간주)과 그 적용이 다름.
- 청약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 바람.(신청이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함)
-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이 상이할 경우,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분양계약 체결 이후라도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계약 해제시 계약금 납부금액에 대한 별도의 이자는 지급되지 않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에 따라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당첨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가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자 일 경우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할 때 해당 최하층을 우선 배정됨. 최하층 우선배정시 다자녀가구와 고령자 또는 장애인세대가 경쟁이 발생할경우 고령자 또는 장애인세대에 우선 배정함. [단, 1층이 없는 주택형은 최저층을 우선배정할 수 있으며,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의하여 과거 특별공급(일반 / 다자녀가구 / 노부모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포함)을 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특별공급 신청불가.(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 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

• 2005.7.1 주민등록법시행규칙 개정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4. 계약체결일 : 2018.04.23 (월) ~ 2018.04.25 (수) (3일간, 10:00~16:00, 각 순위 정당 당첨자 계약체결일 내)

■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격 및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구분		32	34A	34B	36	40	47	50A	50B	52	54A	54C	54D	54E	57	58A	58B
일반(기관추천)특별공급							2			1				1			
다자녀 가구특 별공급	서울특별시 연속 1년이상 거주자(50%)		1						1								
	서울특별시 1년미만 거주자 및 인천광역시, 경기도 거주자(50%)						1					1					
신혼부부특별공급					1			1				1					1
노부모부양특별공급						1											

※ 주택형별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구분	신청자격	당첨자 선정방법
<p>일반 (기관추천) 특별공급</p>	<p>· 대상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 추천 대상자 중 하나에 해당 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된 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의 지역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수도권 거주자로 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에 의거 서울특별시에 1년이상(2017.03.28. 이전부터 계속 거주) 연속하여 거주하는자에게 우선공급(단,경기도 및 인천광역시 장애인, 국가유공자,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은 예외) · 청약자격요건 : 신청주택형의 지역별 예치금 충족 및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제외) ※ 추천기관 ① 장애인 :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과 ②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장기복무제대군인) : 국가보훈처 서울남부보훈지청 ③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 국방부 국군특지단 특지사업운영과 ④ 중소기업 근로자 :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공공판로지원과 ⑤ 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 ⑥ 북한이탈주민 : 하나원 ⑦ 남북피해자 : 통일부 ⑧ 우수선수 : 대한체육회 교육복지부 ⑨ 우수기능인 : 한국산업인력공단 ⑩ 의사상자 : 서울특별시 보건복지과 ⑪ 대한민국 체육유공자 : 국민체육진흥공단</p>	<p>·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당사에 통보한 자 및 해당기관에서 확인서(추천서)를 발급 받은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신청하여야 함 [미신청시 당첨자 선정(동호수 배정) 및 계약 불가]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함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자가 1:1을 초과하는 경우 당첨자 선정 방법은 추첨에 의한. (단, 기관장이 추천한 우선순위를 변경할 수 없음)</p>
<p>다자녀 가구 특별공급</p>	<p>·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 (단, 연속 거주기간 1년 이상인 자) 및 수도권(서울특별시 1년 미만 거주자,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거주자)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미만의 직계 자녀 3명(태아 포함)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청약자격요건 : 신청주택형의 지역별 예치금 충족 및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자녀 3명이상이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이어야 하며, 다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자녀수에는 임신중에 있는 태어나 입양자녀도 포함됨(단, 임신 중에 있는 태어나, 입양자녀를 자녀 수에 포함할 경우에는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입주 전 불법 낙태 또는 파양한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됨) ※ 재혼으로 성이 다른 직계가 아닌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자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전 배우자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다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상 청약신청자와 세대를 달리할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의함.</p>	<p>·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를 서울특별시 1년 이상 거주자에게 공급하며, 나머지 50%는 수도권(서울특별시 1년 미만 거주자,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거주자)에 공급하되 경쟁이 있는 경우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함(미달시 타 시·도에 배정함) · 다자녀 특별공급 배점기준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 하되,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다음의 우선순위로 선정함 (1)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2)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p>
<p>신혼부부 특별공급</p>	<p>·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단, 연속 거주기간 1년 이상인 자) 및 수도권(서울특별시 1년 미만 거주자,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거주자) 지역에 거주하면서 혼인기간(혼인신고일 기준, 재혼포함)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 중이거나 임양한 경우를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제9조에서 정하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 청약자격요건 : 신청주택형의 지역별 예치금 충족 및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 단, 재혼인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 입양한 자녀가 있는 경우 만 자격을 갖춘 것으로 봄 ※ 임신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확인, 출산은 자녀의 기본증명서상 출생일 기준, 입양의 경우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확인 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의함.</p>	<p>·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혼인기간 및 자녀유무에 따라 순위를 정함 (1) 제1순위 : 혼인기간이 3년 이내이고, 그 기간 내에 출산(임신 중 이거나 임양한 경우를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 (2) 제2순위 : 혼인기간이 3년 초과 5년 이내이고, 그 기간 내에 출산(임신 중이거나 임양한 경우를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 · 같은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다음의 순서로 당첨자를 선정함 (1) 서울특별시 연속 1년 이상 거주신청자 (2) 미성년인 자녀수가 많은 자(태아를 포함) (3) 미성년 자녀수(태아를 포함)가 같은 경우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재혼인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임양 포함) 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 만 1, 2순위자로 인정되나, 동일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우선순위 선정시에는 이전 배우자 외의 자녀수도 포함</p>
<p>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p>	<p>·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 (단, 연속 거주기간 1년 이상인 자) 및 수도권(서울특별시 1년 미만 거주자,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거주자) 지역에 거주하면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하고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함) · 청약자격요건 : 청약1순위 요건 충족 ※ 무주택기간 산정 시 노부모(배우자가 있을 경우 배우자도 포함)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거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을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의함.</p>	<p>· 경쟁이 있을 경우 다음의 순서로 당첨자를 선정함 (1) 당해 주택건설 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연속 거주기간 1년 이상) (2) 가정제를 적용하되, 동정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름 ※ 가정제 점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2 나목]의 청약 가정점수 산정기준표로 산정함 (주택전시관 내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석에 비치)</p>

■ 다자녀가구 배점 기준표(국토교통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운용지침\_별표1)

배 점 표(해당사항 있는 각 항목에 √표기)					
평점요소	총배점	배점기준		해당사항	비고
		기준	점수		
계	100				
미성년 자녀수 (1)	40	5명 이상	40		자녀(태어나 입양아를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4명	35		
		3명	30		
영유아 자녀수 (2)	15	3명 이상	15		영유아(태아를 포함한다)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2명	10		
		1명	5		
세대구성 (3)	5	3세대 이상	5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 이 경과된자
		한부모 가족	5		
무주택기간 (4)	20	10년 이상	20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5년 이상 10년 미만	15		
		1년 이상 5년 미만	10		
해당 시·도 거주기간 (5)	15	10년 이상	15		공급신청자가 해당 지역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외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도로 본다
		5년 이상 10년 미만	10		
		1년 이상 5년 미만	5		
		1년 미만	5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6)	5	10년 이상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유의사항					

-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을 적용
-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

-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세대주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상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위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 상이 및 유주택자 등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계약 해제는 물론 관련 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주민등록초본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당해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말한다)의 10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이하여야 함.(※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100%를 넘지 않아야 함)

구분	2017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통계청 자료)		
	3인 이하	4인	5인 이상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5,002,590원 이하	5,846,903원 이하	5,846,903원 이하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6,003,108원 이하	7,016,284원 이하	7,016,284원 이하

※ 6인 이상 가구는 통계청이 발표한 5인가구 소득에 1인당평균금액(405,805원) 합산하여 산정.

(6인가구) : 6,222,708원, (7인가구) : 6,658,513원

\* 1인당 평균금액 = (5인가구 월평균소득 - 3인가구 월평균소득)/2

- 가구당 소득의 산정에 포함되는 대상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 및 성년자인 세대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함)으로 하되,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세대주의 성년인 직계존·비속도 세대원으로 간주함(※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수를 의미하며, 임신 중인 태아도 포함됨)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 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 소득을 산정하므로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구비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 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0		특별공급신청서, 서약서		당사 건본주택에 비치, 무주택 입증서류(서약서로 대체)
	0		인감증명서	본인	또는 서명사실확인서 / 용도 : 주택공급신청용
	0		인감도장	본인	서명사실확인서 및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시는 제출 생략
	0		주민등록증	본인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0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요망
	0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본인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가입)내역 발급 또는 주택청약 서비스 금융결제원 아파트유(www.ap2you.com) 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발급(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0	0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주민등록번호 과거 주소변동 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0	0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상기 등본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0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가 분리된 경우	
일반 (기관추천) 특별공급	0		해당 기관의 추천서	본인	해당 추천 기관장이 발행한 추천서 및 추천명부로 접수함
다자녀 특별공급	0		피부양자의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0		임신증명서류	본인(또는 배우자)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0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또는 배우자)	입양의 경우
	0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또는 배우자)	당사 건본주택에 비치
	0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0		주민등록등본	자녀	재혼가정의 자녀일 경우 세대주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0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세대주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가족으로 5년이 경과한 경우
	0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	0		피부양자의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0		가족관계증명서	피부양 직계존속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0		혼인관계증명서	본인/자녀	만30세 미만 기혼자가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0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혼인신고일 확인
	0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본인 및	공고일 이후 발행본으로 세대주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되지 않은 세대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





■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및 유의사항

동점자 발생시 당첨자 선정기준	·특별공급별 선정기준에 따라 당첨자를 선정하되 동점자 발생 등 당첨자를 추첨으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신청자 또는 일반인 입회하여 주택전시관에서 공개 추첨함 (추첨순서는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다자녀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순으로 함) · 추첨 시간 : 2018.04.02 (월) 15:30 ※ 특별공급 청약신청 과일로 서류심사가 지연될 경우 추첨시간은 다소 변경될 수 있음
당첨자선정/공고 및 확인방법	·당첨자 선정 : 2018.04.02 (월) 16:00 ※사업주체는 당첨자만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금융결제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일반공급 당첨 대상자와 함께 진행되며 동·호수는 무작위로 결정함. (동·호수 배정결과는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공고할 예정임)
특별공급 당첨자 유의사항	·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동·호수 배정, 계약 체결여부와 무관하게 1회 특별공급자격을 공급받은 것으로 간주됨 (향후 모든 주택의 특별공급 공급불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및 제57조에 의거 과거 특별공급,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및 “조정 대상지역”에서 재당첨 제한 기간 내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등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부적격 처리된 특별공급 주택 및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된 특별공급 주택은 관련법령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

■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공급일정

1. 신청 및 당첨자 선정일시·장소

구분	신청접수일	신청방법
일반공급	1순위 해당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민은행 청약통장/인터넷 뱅킹 가입자 :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kr)</li> <li>국민은행외 청약통장/인터넷뱅킹 가입자 :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apt2you.com)</li> </ul>
	1순위 기타	
	2순위	
일반공급 당첨자 발표	2018.04.11 (수) / 16:00	

2. 계약체결일 : 2018.04.23 (월) ~ 2018.04.25 (수) (3일간, 10:00~16:00, 각 순위 정당 당첨자 계약체결일 내)

- 공통사항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및 외국인 포함]. 단, 세대주가 아닌자, 과거5년 이내에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자,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자일 경우 청약 1순위 자격에서 제외되며, 청약 2순위로 신청 가능합니다.
  - ※ 동일순위 신청자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서울특별시 거주신청자가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거주 신청자보다 우선하며,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거주자 신청분은 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수 중인 군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에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수도권 거주자로 본다.
  - 서울특별시 이외의 지역에서 청약예금 가입한 후 서울특별시로 주거를 이전한 자는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변경하여야 청약이 가능함 (단, 인천광역시, 경기도지역 거주자가 주거지 변경 없이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 간 예치금액 변경 없이 거주 지역 해당 청약예금으로 청약 가능함)
  - 신청 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 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하는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함.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됨. (각각 동일한 청약 관련예금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본 주택은 투기과열지구 내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으로, 과거 재당첨제한 주택(분양가상한제적용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이전기관중사자특별공급 등)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당첨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는 재당첨 제한기간 미경과시 청약 불가
  - 상기 주택은 청약가점제 적용아파트로서 일반공급 세대수에서 주거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은 가점제 100%로 공급.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관련 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관리하며, 재사용이 불가함.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이 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며, 향후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및 “청약과열지역”에 청약 시 재당첨 제한 및 1순위 청약이 기간에 따라 제한됨. [단, 부적격당첨자가 소명기간 내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 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1년 동안 다른 분양 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주택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당첨이 취소된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하오니 청약 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람. (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 기재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향후 1년 동안 청약이 제한됨.)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확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반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과대료가 부과될 수 있음.
  - 청약, 전매 및 재당첨 등에 관한 사항은 향후 주택법 및 관계법령 개정내용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습니다.
- 순위별 신청자격 및 공급일정

구분	순위	신청구분	신청자격	거주구분
민영주택	1순위	85㎡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자는 가점제/추첨제 선택 청약이 불가하며,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분류됨. (가점제 100%)</li> <li>1) 가점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청약자 본인 및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에 속한 자</li> <li>2) 추첨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주택을 소유한 세대(청약자 본인 및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에 속한 자</li> <li>※ 단, 만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신청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됨.</li> <li>•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입주자저축 자격요건을 갖춘 자</li> </ul>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2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모집공고일 현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li>-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모집공고일 현재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이하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li>-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모집공고일 현재 잔액기준 범위내에서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전일까지 각 주택형의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li> <li>-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모집공고일 현재 잔액기준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ul>
		<b>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순위자로서 다음 중 1에 해당되는 분은 당 주택에 1순위 청약 불가함.(2순위로 청약 가능)</li> <li>- 세대주가 아닌 자 -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전지역 해당, 모든 청약 대상자)</li> <li>- 2주택이상을 소유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li> </ul>
		전주택형	• <b>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한 자 및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b>
		<b>2순위 청약제한 대상자</b>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 및 과거 ; 청약과열지역에서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내의 세대에 속한자(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는 2순위 청약불가

\*청약전 반드시 아파트 투유(www.ap2you.com)에서 과거당첨사실 조회요망

- 주택소유 및 당첨사실 판단대상 : 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청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된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단,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신청자격 판단시 무주택으로 인정됨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제외).

- 상기 인터넷 접수시간 17:30은 청약접수 완료기준이며 청약 신청 중에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청약신청시 인터넷 또는 은행창구에서는 가정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 체결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 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 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람.

- 동일 순위 경쟁자 중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신청자가 인천광역시, 경기도 거주자 신청자보다 우선하며,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거주자 신청자는 입주자 선정에서 제외 될 수 있음.

- 청약신청은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노약자, 장애우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 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노약자, 장애우 창구청약 가능 시간 : 09:00~16:00, 단, 1순위는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2순위도 주택청약 가입은행에서 신청가능함]

- 2009.4.1부터 은행 영업시간이 변경됨에 따라 인터넷을 이용한 주택청약 업무시간이 **08:00~17:30** 으로 변경됨.

- 건본주택 내에서는 청약접수가 불가함.

- 가정제 적용기준 등 자세한 내용은 본 공고의 가정제 적용안내, 청약가점 산정기준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람.

• 청약관련 예금변경(전환)시 경과기간 및 요건

- 신청가능 전용면적 변경 요건

• 청약예금(청약부금은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85㎡ 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분에 한함)에 가입하여 가입일(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경우는 전환일, 이미 신청가능 전용면적을 변경한 경우는 변경일)이후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변경이 가능하며, 이 경우 금액은 현행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변경하여야 함.

- 신청가능 전용면적 변경한 자 신청 요건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가능.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 제3항 관련)

구분(전용면적기준)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85㎡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102㎡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135㎡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 든 면 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주택청약 참가 은행 : 기업, 국민, 수협, NH농협, 한국씨티,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KEB하나, 신한은행

■ 청약가점제 적용 안내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의거 1순위 85㎡이하의 일반 공급물량의 100%를 가정제로 공급함.

• 가정점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의거 가정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함.

• 청약가점항목 및 점수 : 무주택 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17점) 등 총점 84점.

• 가정제에서 탈락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추첨제 대상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함.

• 점수 입력은 청약자 책임(당첨자 결정 후에 당첨자의 청약내용에 대한 정확성을 확인하게 됨)이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인터넷청약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결제원(www.ap2you.com)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청약 가상채험관”, 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제공하는 “인터넷청약신청 안내” 를 활용하시기 바람

• 청약 가정점수 산정 기준표

가점 항목	가점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 등
① 무주택기간	32점	1년 미만	2	8년이상 ~ 9년미만	18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분리 세대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추가)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만 30세 이전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을 확인)
		1년이상 ~ 2년미만	4	9년이상 ~ 10년미만	20	
		2년이상 ~ 3년미만	6	10년이상 ~ 11년미만	22	
		3년이상 ~ 4년미만	8	11년이상 ~ 12년미만	24	
		4년이상 ~ 5년미만	10	12년이상 ~ 13년미만	26	
		5년이상 ~ 6년미만	12	13년이상 ~ 14년미만	28	

		6년이상 ~ 7년미만	14	14년이상 ~ 15년미만	30	
		7년이상 ~ 8년미만	16	15년이상	32	
② 부양가족수	35점	0명	5	4명	25	- 주민등록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청약자가 배우자 및 자녀와 주민등록상 분리시 부양가족수 산정) ※ 가입자 본인은 제외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	-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점	6월 미만	1	8년이상 ~ 9년미만	10	-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시 자동으로 계산됨)
		6월이상 ~ 1년미만	2	9년이상 ~ 10년미만	11	
		1년이상 ~ 2년미만	3	10년이상 ~ 11년미만	12	
		2년이상 ~ 3년미만	4	11년이상 ~ 12년미만	13	
		3년이상 ~ 4년미만	5	12년이상 ~ 13년미만	14	
		4년이상 ~ 5년미만	6	13년이상 ~ 14년미만	15	
		5년이상 ~ 6년미만	7	14년이상 ~ 15년미만	16	
		6년이상 ~ 7년미만	8	15년 이상	17	
		7년이상 ~ 8년미만	9	-	-	
총 점		84점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 소유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거 신청자격 판단시 무주택으로 인정(노부모특별공급 제외)						

• 가정 항목별 적용기준

구분	신청자격
무주택기간	<p>1)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입주자저축 가입자를 포함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직계비속을 말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되 제5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이에 따른 소형·저가주택 소유자를 무주택자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한다.</p> <p>2)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으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이하 “소형·저가주택”이라 한다)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자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자(배우자를 포함한다)는 그 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소형·저가주택의 주택가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이하 “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 중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르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본다.</p> <p>3) 무주택기간은 입주자저축 가입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p> <p>4) 1)부터 3)까지에 따른 무주택기간의 적용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p>
부양가족의인정	<p>1) 부양가족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직계비속(미혼인 자녀로 한정하며,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미혼의 손자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으로 한다. 다만,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부양가족으로 본다</p> <p>2)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은 입주자저축 가입자[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 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p> <p>3)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만30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p>
입주자저축가입기간	<p>1)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p> <p>2)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에 대한 가정점수는 청약 신청시 자동 부여한다.</p>

■ 주택소유에 관한 유의사항

- 건물외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함.
-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세대주,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됨.
- 주택매매 등 처분사실은 건물등기부등본상 등기접수일(미등기주택은 건물등 관리대장등본 상 처리일) 기준임.
-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됨.
-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판명내용이 다르거나 의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사업주체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 을 참고하시어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검색대상 : 신청자와 그 세대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에 한함] 및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 [직계존비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에 한함]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처분 기준일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①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② 건축물관리대장 : 처리일 ③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나 입주자모집 승인권자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① 사용 검사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② 85㎡ 이하의 단독주택

③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모집 승인권자로부터 제52조 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속소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20㎡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이 있을 경우 노부모 특별공급시 유주택자로 간주함)

-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남아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 또는 멸실되어 있거나, 주택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이를 멸실 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소형. 저가주택 1호를 보유한 경우의 특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

- 「전용면적 60㎡ 이하이며, 공시가격이 수도권 1억3천만원 이하, 비수도권은 8천만원이하인 1주택(소형저가주택)」 소유에 대해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분은 민영주택 또는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을 청약하는 경우에 한해 소형·저가주택 보유기간을 무주택기간으로 인정함.

- 현재 소형·저가주택 소유자 :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소형·저가주택”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경우

※ 주택공시가격 적용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이하 “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중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르면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봄.(단, 2007. 8.31이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도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의한 민영주택의 일반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특별공급 제외)시 적용함 • 현재 무주택자 : 종전에 소형·저가주택을 처분한 후 계속 무주택자로 있는 경우 → 해당 소형·저가주택의 보유기간도 무주택으로 간주함 (특별공급 시 적용 제외)

■ 청약신청 접수방법

1. 특별공급을 제외한 일반 1,2순위 청약신청 접수는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입주자 선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순위에 의함

2. 특별공급 : 해당 청약신청 기간에 출발공원 승운 노블리안아파트 건본주택에서 청약신청 하여야 함

3. 일반공급

• 공통 : 층별, 동별, 호별 구분 없이 주택형태로 청약순위별로 접수하고 선순위 신청접수결과 일반공급 세대수의 140%에 미달된 주택형에 한해 차순위 청약접수를 받음. (단, 2순위까지 청약접수결과 신청자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40%에 미달하는 경우 더 이상 접수하지 않음)

• 1순위 : 본 아파트는 청약과열지역 주택으로 1순위 접수시 무주택자(세대주)는 가점제로 입주자를 선정함.(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

• 2순위 : 청약신청자 전원 추첨제로 청약 접수함.

4. 청약신청방법

구분	신청대상자	신청방법	신청장소
특별공급	일반특별/다자녀가구/신혼부부/노부모	• 건본주택 방문 접수 (인터넷 신청 불가)	• 건본주택 : 서울시 강북구 수유동 2-5번지 출발공원 승운 노블리안아파트 건본주택
일반공급	1순위/2순위	• 인터넷 신청	• 국민은행 청약통장/인터넷 뱅킹 가입자 :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kr) • 국민은행외 청약통장/인터넷뱅킹 가입자 :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ap2you.com)

※ 일반공급 청약접수 종료시간인 17:30은 청약접수 완료기준으로 접수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5. 청약신청시 유의사항

• 청약 신청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하여는 취소 및 정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 주택소유여부 확인 대상은 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청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 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임. (단,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신청자격 판단시 무주택으로 인정되나, 노부모 특별공급은 제외 됨)

• 청약 신청시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해 확인(검증)없이 청약자가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므로 청약신청을 하고자 하시는 분께서는 본인의 청약자격(거주지역, 거주개시일, 무주택기간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청약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 체결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징구하여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 신청시 유의하기 바람.

• 허위 또는 착오로 부적격자가 신청하여 당첨될 시에는 계약 및 청약관련 통장 재사용이 불가함.

•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 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노약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 (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노약자, 장애인, 인터넷 취약자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 청약 접수 방법 : 청약 접수 당일 아래 구비사항을 준비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에 방문 청약 접수(청약접수 가능시간 09:00-16:00)

구분		구비사항
일반 공급	본인신청시(배우자포함)	· 주택공급 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청약예금, 청약부금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배우자 서명 · 주민등록표등본 1통 · 본인 확인증표(배우자 대리 신청시는 배우자의 본인 확인증표) : 주민등록증(본인 또는 배우자)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배우자 신청시 배우자 입증서류 추가제출(동일세대 구성시 : 주민등록표등본 1통, 분리세대 구성시 : 가족관계증명서 1통) [배우자 관계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제3자 대리신청시 추가사항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 (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음.
-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신청을 해야 함.
-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 5. 당첨자 발표

#### ■ 당첨자 발표 일정 및 장소

구분		일시	장소
특별공급	당첨자발표	2018.04.0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소 : 당사 홈페이지(<a href="http://www.syoon.co.kr">www.syoon.co.kr</a>) 또는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a href="http://www.ap2you.com">www.ap2you.com</a>,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li> <li>※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사 주택전시관에서 반드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li> </ul>
	동호수발표	2018.04.11(수)	
일반공급	당첨자 및 동호수 발표	2018.04.11(수)	
	예비당첨자 및 예비순번발표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아파트투유 홈페이지([www.ap2you.com](http://www.ap2you.com))에서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시에는 공인인증서 로그인(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성명, 생년월일 입력)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람.

※ 당첨자 및 동·호수 발표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음(전화문의는 착오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람)

#### ■ 예비입주자 유의사항 및 공급 방법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당사 주택전시관에 내방하여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당사에 통보하여야 함.(통보하지 않을 경우 연락처 및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당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람)
-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 당사 홈페이지( [www.syoon.co.kr](http://www.syoon.co.kr))에 공개될 예정임.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당첨자의 동·호수와 미계약 동·호수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공급일정은 별도로 통보할 계획임.
- 정당 당첨자의 계약사항, 부적격세대 발생 및 소명여부에 따라 일부 또는 전 주택형의 예비입주자의 공급이 없을 수 있으며, 예비입주자 공급 주택형 발생시 주택형별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추첨)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공급세대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함.
-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예비입주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향후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함.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당첨된 주택의 계약체결기간 만료전에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주택의 계약체결을 통보받은 때에는 이들 주택 중에서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먼저 계약을 체결한 주택에 대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것으로 봄. (동 사유에 해당하는 예비입주자는 동·호수 배정 추첨전에 계약할 주택을 선택하여야 하며,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를 배정받은 경우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를 배정받은 주택의 당첨자로 인정되며, 기 당첨된 주택의 당첨사실은 무효처리함)

#### ■ 인터넷, 휴대폰 문자 당첨자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써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사 홈페이지([www.syoon.co.kr](http://www.syoon.co.kr)) 또는 주택전시관에서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람.

구분		모든은행청약자(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	국민은행 청약자
이용기간		2018.04.11 (수) 부터 조회 가능(※발표일로부터 10일간 조회가 가능하나 당첨자의 계약기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아파트투유 홈페이지( <a href="http://www.ap2you.com">www.ap2you.com</a> )접속->APT인터넷 청약->당첨사실 조회	국민은행 홈페이지( <a href="http://www.kbstar.com">www.kbstar.com</a> )접속 ->KB부동산->주택청약->당첨확인
휴대폰 문자서비스	대상	주택청약 신청시 SMS당첨 통지서비스를 신청하신 분 중 당첨자	주택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자
	제공일시	2018.04.11 (수) 08:30(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6. 계약체결

#### ■ 계약 체결 일정 및 장소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금액 확인 후 지정된 계좌(계약금)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필수 구비사항과 해당 추가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장소를 방문하시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구분	계약 기간	계약 장소
당첨자 계약 체결	2018.04.23 (월) ~ 2018.04.25 (수), 3일간, 10:00~16:00	솔밭공원 승윤 노블리안아파트 견본주택 (서울시 강북구 수유동 2-5번지)

■ 계약 체결 조건 및 유의사항 [이종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_「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4호]

- 당첨자 계약 체결기간 준수

-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당첨자 포함)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자격제한 없이 임의 분양함.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부적격 사항에 대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정당한 사유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부적격 사항 소명 안내 : 관련기관의 전산시스템과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입주대상자의 현황이 상이할 수 있으며, 부적격 사항 및 적격여부 확인이 필요한 자료 통보된 경우 소명기간 내에 서류 확인 등을 통하여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이 가능함.

- 계약체결 이후 관련법령 등의 처리 및 검증으로 인한 당첨 및 계약취소 확인

- 계약체결 후에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하며 당첨자로 관리함.

(1)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 참조 (2)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3)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4)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 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당사 분양사무소에 방문하여 “계좌부활요청서(당사 비치)” 작성시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본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1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을 제한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4항에 따라 아래 해당하는 경우 당첨자로 인정함.

① 같은 청약 순위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② 같은 청약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대한민국 이외의 국적인 자가 분양을 받을시 “외국인 토지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외국인 토지 취득신고를 하여야 함

• 본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자는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사업주체와 공동으로 하여야 함.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일정한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람.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준함

■ 부적격 당첨자의 명단관리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58조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전산관리지정기관에 통보함.

• 전산관리지정기관은 제58조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58조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함.

• 제58조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1년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봄. 다만,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같은 순위(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계약시 구비사항

구분	서류유형		구비서류
	필수	추가 (예당자)	
공통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약금 무통장 입금 영수증[주택전시관에서 계약금(현금 또는 수표) 수납 불가]</li> <li>· 본인확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li> <li>· 주민등록등본(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1통 포함)</li> <li>· 인감증명서 또는 서명확인서(아파트 계약용) 1통</li> <li>· 인감도장(아파트 계약용) 1통(서명확인서 제출 시 서명으로 가능)</li> </ul>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등록초본(주소지 변동 내역 모두 포함하여 발급)</li> <li>· 대리계약 시(본인 외 모두 제3자로 간주함)</li> <li>- 위임장, 인감증명서(아파트 계약 위임용) 1통, 대리인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li> <li>·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부(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1통)</li> <li>· 외국인인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통)</li> </ul>
일반공급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족관계증명서(단독세대 등 배우자 유무확인 불가 시)</li> <li>· 주민등록초본(거주기간 및 세대주 기간 확인 불가 시 / 직계존비속,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li> <li>· 혼인관계증명서(만 30세미만 기혼자가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li> <li>·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 군 복무기간(10년이상)이 명시된 복무확인서 1부</li> </ul>
부적격 통보를 받은자 (해당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li> <li>·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li> <li>·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li> <li>·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li> </ul>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람.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은 공급신청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공급금액 납부제차 및 납부방법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하나은행	211-910011-53904	프린스연립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 계약자 중도금 대출안내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기관의 규제 등에 따라 사업주체의 중도금 대출 알선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함. (중도금 대출 은행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음, 계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불과함)

· 본 주택은 사업주체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할 경우에도, 금융관련 정책, 대출기관의 여신 관리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규정 등으로 대출조건이 각 세대별, 각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최종적으로 중도금 대출 실행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중도금 대출 불가 및 대출한도 축소 등으로 인한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고 이와 관련된 책임을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부담하지 않음.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대출 가능 여부 반드시 확인)

· 금융관련정책, 대출기관의 여신관리 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 규정 등을 감안한 대출(이하 “적격대출”) 관련 세부내용은 향후 당사 주택전시관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사업주체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신청 여부는 계약자의 선택사항임.

· 적격대출 시 금융기관,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의거 계약금 10% 완납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고 계약금 일부 미납 시에도 중도금 대출이 불가함.

· 적격대출가능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는 분양계약 체결 후 사업주체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 협약은행과 중도금 대출을 별도로 체결하여야함. 단, 대출 미신청자와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라 하더라도 중도금 대출실행이 전에 본인의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대출이 불가능 하게 된 계약자는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함.

·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음.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대출취급(보증) 수수료(집단대출 보증기관의 보증수수료 등),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금융기관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적격대출은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타 은행 대출, 대출한도 및 건수 초과, 한국주택금융공사(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정부의 금융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 하거나 중도금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별도로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함.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요구로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잘못이 아닌 계약자의 결격사유에 기인하므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적격대출 시 대출은행과의 중도금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주택금융공사 중도금 대출보증(9억원 이하 주택)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의 경우 세대당 1건으로 제한되었으며, 금융기관의 대출조건에 따라 일부 중도금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가 대납하던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의 특유성(업종, 업대 등) 및 대출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적격대출 시 중도금 대출약정 기간은 중도금대출 최초 실행일로부터 사업주체가 알선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이며 대출이자는 사업주체가 대납하되 계약자는 입주 시 사업주체에서 지정한 기일 내에 대납 이자를 사업주체에 일시 납부하여야 하며,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계약자 본인이 해당 대출은행에 직접 납부하여야 함.

· 본 주택의 입주지정일이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경우에도 중도금 대출 이자는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 사업주체가 대신 납부하며,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 일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계약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함.

·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하지 않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받은 경우 그에 대한 이자는 계약자가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함.



- 적격대출 관련 중도금 대출 신청 관련 안내는 당사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사유로 인한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음.
- 계약자는 입주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또한, 담보대출에 따른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수수료 및 근저당설정 비용 등은 대출은행이 정한 부담 주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담보 전환 시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기타대출조건 등은 대출은행의 조건에 따르기로 함.

7. 발코니 확장공사 계약

※ 발코니 확장공사 계약은 공동주택 공급계약과 별도로 계약을 진행함.

※ 발코니 확장공사의 판매일정, 계약내용, 납부일정(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납부계좌 및 제품에 관한 사항 등은 주택전시관(분양사무소)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발코니 확장 공급 금액

구분	발코니확장비	발코니확장비 납부일정			비고
		계약금 (계약시)	중도금 (2018/06/15)	잔금 (입주시)	
전타입	10,000,000	1,000,000	1,000,000	8,000,000	

※ 단, 발코니확장비의 경우 향후 발주처, 시공자 및 수분양자와의 협의에 의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하나은행	211-910011-53904	프린스연립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 유의사항

-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4호, 제46조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변경을 할 수 있으며, 발코니 구조변경은 입주자모집공고시 공개된 총액 범위 내에서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2005.12.02. 개정 시행).
- 발코니 확장비는 공동주택 분양금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의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임.
- 상기 발코니 확장비 일괄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음.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 시점 이후에는 발코니 확장 계약이 불가능하며, 발코니 확장 계약은 주택 전시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발코니 확장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등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확장 위치 등 세부사항은 분양카달로그 및 주택 전시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발코니 확장은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므로 사업주체가 직접 시공하도록 제한함.
- 단위세대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음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사양(유리, 창틀) 및 열림방향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 창호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는 환기 등으로 예방하여야 함.
- 상기 발코니 확장시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부과될 수 있음.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의 개별 입주자가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 입주자의 민원 발생 시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하며 또한 입주 후 상당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엔지니어 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칙적으로 시공 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사업주체는 적절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 하였으므로 본 아파트(공동주택)의 사업 주체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 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 공사가 일부 변경될 경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발코니 확장 선택시 동일평형이라도 해당 동·호수에 따라 확장구간의 폭 및 깊이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8. 기타 계약자 안내

■ 입주자 사전점검 안내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7호

- 당사는 국토교통부 “입주자 사전점검 운영요령” 에 따라 입주개시 전 약 1~2개월 전에 특정 일자를 통보 하여 사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임
- 사전점검 진행절차 : ① 사전점검안내문 발송 → ② 입주자현장 도착 → ③ 접수, 교육 안내 → ④ 입주자점검 및 지적사항 작성 → ⑤ 점검표 제출 → ⑥ 입주전 보수완료 → ⑦ 보수완료 여부 확인
- 사전점검 대상 :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

■ 입주예정일 : 2018년 11월 예정 (향후 일정 등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추후 개별 통보키로 함)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음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건축계획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등이 수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소

■ **택지비 감정평가 금액 산출내역**

대상 토지	해당면적(m <sup>2</sup> )	감정평가금액	감정평가기관	연락처
서울특별시 도봉구 쌍문동 503-29 외	2,735m <sup>2</sup>	8,328,650,000원	(주)경일감정평가법인	TEL. 02-2142-3800 FAX. 02-2142-3803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구분	건축/토목/기계설비	소방	전기/통신	비고
회사명	㈜미가존종합건축사사무소	㈜서광이에프	㈜서광이에프	부가세포함
감리금액	208,113,400	11,000,000	11,000,000	

※ 감리금액은 감리회사와의 계약변경 등으로 인하여 증감될 수 있음.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분	회사명	등록번호	주소
사업주체	프린스연립재건축정비사업조합	210-81-74020	서울특별시 도봉구 쌍문동 503-29외 2필지
시공사	승윤종합건설(주)	109-81-69775 (건축공사업 제 01-0736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월정로 31길 27, 201호

■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항목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필요시)	항목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필요시)
고기밀 창호	적용	창문 사양: 합성수지 미서기 사중창 성능: 2등급이상 설치위치: 외벽창호	문	적용	문 사양: 철재 단열문 성능: 2등급이상 설치위치: 세대현관, 테라스
고효율기자재	적용	가정용보일러(효율 91.2%)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	해당없음	
대기전력차단장치	적용	각 실마다, 주방, 거실에 설치(197개)	실별온도조절장치	적용	각 거실, 침실 출입문쪽
일괄소등스위치	해당없음		절수설비	적용	모든 위생기구 및 수전류 절수형 사용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사고, 보증범위 및 보증제외 대상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내용

구분	보증기간	보증금액	보증서번호
공동주택 -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부터 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포함)까지	2,525,400,000원 (일금이십오억이천오백사십만원)	제 01222018-101-0001700 호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채무의 내용 및 보증대상 제외사항

○ 보증사고(보증약관 제4조)

- ① “보증사고”라 함은 보증기간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보다 25퍼센트P 이상 미달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요하지 아니합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 ② 보증사고일은 보증회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을 통지하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보증회사는 이 보증서에 기재된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한다)에 게재함으로써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접수일

-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보증채무의 내용(보증약관 제1조)

보증회사는 주택도시보증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당해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등의 납부(보증약관 제2조)

- ① 보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합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기타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 허위계약, 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보증회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한다)에 납부하지 아니한 입주금.
-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증지를 통보한 후에 그 납부증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보증회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초과하여 납부한 입주금
-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기타 중속채무
-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 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 보증사고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흡ود, 발코니창호, 마이너스옵션 부위, 기타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다만, 사양선택 품목과 관련한 금액이 보증금액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기타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대어받아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 보증회사가 제6조에 의거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보증회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납부한 잔금
  -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 10. 기타 유의 사항

▣ 유의사항 [반드시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란은 평형으로 기재하지 말고 입주자모집공고상[주택형(㎡)]으로 기재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평형 환산 방법 : 주택형별 면적(㎡) x 0.3025 또는 주택형별 면적(㎡) ÷ 3.3058]
2009. 4. 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 공급면적(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 기준에서 주거전용면적을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며, 사업주체는 주택형 오기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계약체결 후 해약하게 되는 경우 계약시 공급계약서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합니다.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 본 공동주택(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은 분양후 일정기간 공개후 시공사 사정에 따라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면설계 및 마감재 등을 촬영, 보관할 예정입니다.
- 사이버 건본주택의 VR동영상은 건본주택을 촬영한 것으로 마감재 이외에 디스플레이를 위한 전시장품이 포함된 VR동영상이므로 사이버 건본주택상의 전시장품 안내 및 건본주택을 계약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건본주택에 설치되는 감지기, 유도등, 스프링클러 헤드의 위치 및 개수는 건본주택 운영을 위한 것이며 본 공사시 소방방규에 적법하게 설치됩니다.
- 본인 동호수 지정시 동일평형이나 건본주택과 달리 평면이 좌우대칭이 될 수 있으니 청약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이후 입주자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내외, 공용부분 시설물)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건본주택 및 카달로그 등에는 소비자의 주택형에 대한 인식의 편의를 위하여 간략한 표기를 한 부분이 있으니 청약 및 계약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 방지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주택(아파트)의 주거공용면적(계단실 코아) 및 기타 공용면적(부대복리시설, 기계실, 주차장등)은 세대 전용면적에 따라 균등하게 계산 배분됩니다.
- 이 공동주택(아파트)은 실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질서를 어지럽힐 경우에는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당첨자가 계약 체결시 건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 청약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황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시공사와 무관한 사항입니다.
- 일부세대는 공사 시행중에 품질 관리를 위하여 수분양자와 협의하여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본 공동주택(아파트)의 공사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굴,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종 광고, 홍보 유인물(사이버 건본주택, 홍보 카달로그, 홈페이지 안내문 등)에 표시된 도로, 기타 공공시설 등의 개발계획은 현재의 계획 및 예정사항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건본주택 내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전시용품, 옵션품목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나, 본 공사시에는 전시용품은 설치되지 않고, 옵션품목은 유상으로 추가 선택시에만 설치되며, 계약내용에 따라 시공됩니다.
- 건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승인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발주처·시공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해 사업에 사용된 사업주체의 브랜드 등은 향후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선수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 본 공동주택(아파트)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동별,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주택형별, 동호별 등의 공급금액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개인신용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분양계약자는 이에 동의없이 동의합니다.
- 각 세대의 대피는 하향식피난구로 계획되어 있어 하향식피난구로 인해 층간 방범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인허가상 불가피한 사항이며, 화재시 아래층으로 대피하므로 사용 및 유지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람.(1층 및 플로티 상부세대 제외).
- 본 주택은 세대별 쓰레기 투입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 세대 내부 옵션 관련 사항은 분양계약시 개별 공지 예정입니다.

29. 사업부지 현장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30. 견본주택에는 54C형외에는 설치되지 않으며, 설치되지 않은 그 밖의 평형 및 타입은 단위세대 모형과 카다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계약전에 평면 형태, 가구배치, 실면적 등 견본주택 설치 주택형과 다른 사항을 숙지하여 계약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31.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반적으로 해약 조치되며 계약금을 제외한 이자 및 금융비용 등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32. 개인적인 확장공사 또는 인테리어 공사 등으로 인한 세대 내외부 파손 및 훼손사항은 본인 책임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33.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및 주거공용면적 합,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절차 측 준공 시 확정 측량으로 인한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며 이 경우 부대 복리시설 면적 조정 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34. 입주 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35. 준공 입주 후 지하주차장 및 기타공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피트공간은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36. 단지에 설치되는 부대/복리시설 및 커뮤니티시설 등에 대한 사용과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실 입주 후 (가칭)주인자치협의기구에서 결정되며, 입주인 전체의 공동시설물로써 사용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37. 세대내 통신단자함, 세대분전반 설치위치 및 선반의 배치는 본 공사시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좌우 세대에 따라 상이합니다.

38. 아파트 계약면적 외의 비주거부분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39. 공동주택 세대별 대지지분은 공동주택 총 대지지분을 주택형별 공급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습니다.

40. 견본주택은 사업주체의 분양일정 및 운영사정에 따라서 입주예정자들의 사전동의 또는 안내 없이 철거될 수 있습니다.

45. 본 슬발공원 승운 노블리안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문상의 문구 중 사업주체의 고의가 아닌 착오,누락 또는 오류로 인해 일부 표기가 잘못될 수 있으므로, 혼동을 야기하는 경우 사업주체에 대한 질의를 통해 정확한 내용을 재확인 할 수 있습니다.

■ 설계관련 및 기타 유의사항 [아래 주요사항을 숙지하기 바라며 변경 등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동주택의 현상여건 및 구조/기능/성능/상품 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법규(건축법, 주택법 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관계법령의 변경, 인허가 과정 및 실 시공시, 외관개선을 위하여 건물외관(지붕, 옥탑, 전후면 외관, 축벽, 동출입구, 발코니 앞 장식물, 창틀모양 및 색, 색채), 난간의 형태 및 높이, 경비실, 문주, 부대 복리시설 등은 입주자의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아파트 축벽문양은 현장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동별 3층이하는 축벽, 주출입구측은 석재등 마감이며, 현장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축심의 내용 이행 또는 심의내용 중의 상충이 발생하는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변경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계약물건의 계약체결일 이후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여건에 따라, 단지 내 공용 시설물 및 도로선형의 변경, 단지내 설치되는 옹벽·석축 등의 종류·높이·이격거리·위치·재질 등의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 이전 제작, 배포된 홍보물은 사전 홍보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 방문하여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극안내문 및 카탈로그 등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의 전시품 및 연출용 시공부분, 카탈로그, 팸플릿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구획선과 시설물의 위치, 규모 및 색채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 심의결과에 따라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양의 기준이 되는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물(인터넷, 신문광고 등)상의 마감재(규격, 재질, 디자인, 색상 등)는 주택형에 따라 마감자재 내용이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평면도 및 이미지 컷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가구 등을 시뮬레이션 한 것으로 계약 시 포함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기본형 세대 선택 시 제외 품목이나 기본품목, 공간분할 등에 대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위세대 마감자재 내용은 주택형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견본주택 및 모형, 마감재 보드, 인쇄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견본주택 기준으로 합니다)

• 견본주택에 시공된 마감자재는 자재 품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와 사업자의 시공여건 또는 신제품의 개시에 따라 동급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 건립세대, 주민공동시설, 카탈로그 및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전시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단지 모형의 조정, 식재, 주변환경 및 부지 고저차 등은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창호 및 문의 형태 및 위치는 견본주택 및 분양 안내책자 기준으로 시공되나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방향, 형태가 실제 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확장 부분의 외부 창호는 이중창호 등으로 설치되어 향후 입찰 결과에 따라 창호사양 (제조사, 브랜드 및 창틀, 하드웨어, 유리 등) 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피공간의 창호 및 도어, 실외기실 그릴 및 도어는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방향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관 및 드레스룸 중문은 향후 입찰 결과에 따라 창호사양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 가구 설치 부위의 비노출면은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 콘센트, 스위치의 제품 사양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환기유닛, 환기디퓨저, 온도조절기, 선풍통, 바닥배수구, 위생기구, 욕실 약세사리의 제품사양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가구 및 일반가구(신발장, 불박이장, 화장대 등)의 도장 제품은 설치 후 시간경과시 황변 및 표면의 평활도가 변형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 설치된 제품 대비 도막 두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계약자가 희망하는 규격(용량)의 가전제품(감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세대 마감자재(수전 및 액세서리류)의 설치 위치는 마감치수 및 사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견본주택에 설치되는 위치와 일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 투시도 등에 표현된 아파트 입면에는 실제 시공시 줄눈 또는 문양이 형성되는 등 세부 디테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단지 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합니다.

• 대지경계 및 면적은 정비계획 및 사업시행인가 변경 등으로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시 대지경계 및 지적 확정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 처리시 입주자는 동의하여야 합니다.

• 세대당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은 인허가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시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공급가격에 의해 계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합니다.(단, 소수점 이하 면적변동 및 이로 인한 지분 변동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기로 합니다.)

• 아파트의 구조 및 성능 개선을 위하여 전용면적(공용면적제외)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내부구조의 위치 또는 면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면적 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단지 조경 및 세부 식재 계획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외부시설물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외곽의 돌쌓기 위치 및 형태는 준공 점수 인허가과정 또는 현장 주변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단지외 외부 도로사이의 경계담장은 행정관서의 지침 또는 주변 단지 민원에 따라 설치여부, 설치구간, 재질 및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 수경시설 및 조경수 식재위치는 입체적 단지 조화를 고려하여 설치하나 식재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단, 규격이나 수량의 변경이 있을시 당초 계획보다 동등이상으로 시공됨), 관계기관 심의결과, 시공과정 등에 따라 조경 시설물에 따른 조경 선형이나 포장 및 조경 시설물의 재료, 형태, 색채,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조경, 저층부 외벽마감, 동 현관, 지하 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외부 입면계획에 의해 장식물 등이 세대 외벽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외관 구성상 일부 세대의 전후면 발코니 및 옥탑 상부 등의 위치에 장식물이 부착될 수 있습니다.
- 단지 각 차량 및 보행자 출입구의 차별화 디자인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측량결과에 따라 대지주위 도로 폭, 단지 내 도로선형, 시설물의 위치, 조경(수목, 수경시설, 조경시설, 포장), 단지 레벨 차에 따른 옹벽의 형태 및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따른 설계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 측량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 및 지반레벨(계획고)은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하부 커뮤니티 시설, 지하층 충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지주위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사항은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결정되므로 도로 폭 등의 사항이 다소 변경되어질 수 있습니다.
- 단지와외부의 도시계획도로의 레벨조정으로 도로 경사도 및 도로접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면서 지반레벨(계획고)이 현장 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옥외조명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주동 색채 및 옥외시설물은 향후 상위 지침변경 및 인허가 과정 중 입주자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1층 로비 평면 계획(지하층 로비/복도 포함) 등은 상세계획에 따라 공사 중 설계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코아 평면 및 창호 형태와 설치계획은 공사중 설계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지하층 피트 공간은 지반현황에 따라 바닥레벨, 평면 및 구조형식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의 구조 및 지하주차장의 기초구조는 굴토 후 지내역시험 결과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으며, 일부구간에서 교차로가 형성 되며, 교차 부분에서는 보행자 동선과 차량 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는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발코니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은 노출배관(천장·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의 발코니 또는 실외기실 천장에는 환기를 위한 전열교환기 및 덕트가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세대의 경우 발코니 천장에 상부세대 배수배관이 시공되어 배수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과 창호의 형태 및 사양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시공사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확장시 마감재 설치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으며, 단위세대는 발코니 확장형을 고려하여 설계되었으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당하신 후 계약조건을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체결 하시기 바랍니다.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홍통 및 드레인 등이 계획 시공되어질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 선택시 가구를 설치하여 처리하더라도 미관상 조잡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확장 선택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세대의 주방 발코니 상부에 렌지후드 환기배관 및 배기 덕트가 노출될 수 있으며, 하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내에 실별 가구(장롱, 불박이장) 설치시 필히 실측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마감, 단열재 두께 등의 차이로 도면에 표기된 크기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바닥, 벽, 천장부분에 가구(주방, 침실, 욕실, 신발장 등) 및 거울(수납장 포함) 등으로 가려지는 부분은 원활한 시공진행을 위하여 최종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인허가 과정 및 본 공사 과정 중 사용성 개선을 위해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동일한 평면이라도 위치에 따라 입면재료가 상이하니 계약전 필히 해당 세대 입면을 충분히 확인하여야하며, 입면재료에 따라 창호상세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공장생산 자재(예: 타일 등)의 경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해 결정됩니다.
- 천연자재는 자재 특성상 일정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명시된 내용에만 한정합니다.
- 실시공사 세대내 화장실의 천장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 구배와 천장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 욕실 단차는 바닥구배 시공으로 인하여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욕실의 단차는 거실 및 침실내부로 물넘김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획된 것입니다. (욕실화의 높이와는 상관없으며, 문 개폐 시 걸릴 수 있습니다.)
- 발코니/욕실/현관 등 단차부위 시공오차가 있을 수 있으며 욕실의 신발 걸림과 무관합니다.
- 본 공사시 욕실 천정에 배관 점검을 위한 점검구를 설치 예정입니다.
- 1층(저층) 전·후면에 소방법상 공기안전매트 설치 등 소방 활동 공간이 필요하므로 식재에 따른 프라이버시 확보부분이 미흡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단지 상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주방 상부장은 깊이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세대의 가스계량기 위치는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내 점검구는 설비공사 등의 유지관리를 위해 수량이 증감될 수 있으며, 사양, 위치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싱크대 하부에는 운수분배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싱크대 하부공간이 부분 수정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내 환기 시스템은 본 공사시 설치위치에 따라 장비 및 배관 등이 노출되며, 건축 입면 및 내부마감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환기장치 가동 시 운전소음이 발생하여 거실(침실)내로 전달될 수 있으며, 세대내 환기장치로 인해 가동시 장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실내 환기구 위치 및 개소는 사업승인도서에 준해서 설치될 예정이며, 성능 개선을 위하여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관리사무실, 지하주차장, 경비실 등은 동선, 성능 개선 및 대관 인허가를 통하여 실시공시 위치, 다른 실로의 변경·통합, 사용자 동선, 입면 형태(색채, 재질, 간판 형태 모양), 실내구획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출입구 경비실 위치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이동하여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의 명칭, 동표시, 외부색채와 외관, 옥탑디자인, 외부조명시설, 문주, 동출입구, 외부난간 형태/높이 및 단지 조경 등은 현장여건 및 인허가 관청과의 협의, 협의과정에서 향후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간 소음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필로티, D/A(설비 환기구), 생활폐기물 보관소, 관리동, 선큰, 주차램프, 외부계단, 문주 등의 설치로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소음피해,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판상형 및 탑상형 구조가 혼합된 단지로서 단지 배치상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단지 주출입구, 부대복리시설, 주차출입구 등 단지내 시설물 등에 의해 특정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야간조명 효과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건축법 및 주택법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 건물에 의하여 조망권 및 일조량이 감소될 수 있으며, 야간조명 효과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이 및 소음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 인접 동 및 인접 세대에 의해 각 세대의 배치에 따라 조망과 향, 일조량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일부 저층세대는 프라이버시가 불리하고, 소음, 조망, 일조, 진동, 냄새 측면에서 불리할 수 있으니 각 시설의 위치를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동 출입구 형태에 따라 동 현관 및 장애인 경사로 설치에 따른 시각적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보안/안전상의 문제로 경비실(이동식 또는 고정식)이 추가 설치 될 수 있으며 위치에 따라 저층부 세대의 소음피해,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배치계획과 동 평면계획상 부득이 하게 일부 단위세대 침실 등이 엘리베이터 승강로에 직접 면하게 되어 엘리베이터 운행 중 진동/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주차장 및 펌프실, 전기실 등의 환기와 제연팬의 급기/배기를 위하여 D/A(설비 환기구)가 각동 1층 필로티 및 지상층에 설치되므로 사전에 분양 홍보물(모형/배치도/분양 카다로그 등)을 참조하여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는 실제 시공 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발전기 및 지하시설물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환기창, D/A)이 노출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냄새 및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청약 접수 전 반드시 확인 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필로티가 설치되어 있는 일부 동의 필로티 옆, 상부층 세대는 외부통행에 의한 소음 발생으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으며, 필로티 위층의 바닥 난방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 각동 필로티 내에는 제연 환풍의 그릴창이 설치되어 작동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사전에 사업부지 내,외 현장을 반드시 방문하시어 주변현황(특히 지상철) 및 현장여건,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지상도로가 없는 일부 세대의 경우는 이삿짐 운반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해야 하며, 단지내 지상도로가 있더라도 단지배치 특성상 일부세대에는 이삿짐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전체 단지 통합으로 계획되어 있으므로 현재의 배치, 동별 주차 배분은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동별 주차대수, 동출입구 개수, 출입동선 길이 등)
-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등 단지 내 부대시설 사용에 대하여 각동별 사용시 계단실 등의 위치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의 배치 및 사용상에 대해 충분히 확인바랍니다.
- 일부 동의 경우 옥상에 태양광 패널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세대 현관에 스마트 도어카메라 설치로 인하여 동 출입구에 안내표시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